

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 개정(안)

2020. 7.



기관규칙개발팀

2020.08.01.일자 시행사항
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지침은 정보기술(IT)이나 운영기술(OT)을 운용하여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 또는 선박에 적용한다. 2. 이 지침은 사이버보안 시스템의 수준 및 그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선주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. 3.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선급 및 강선규칙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 다만,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은 제외한다. 4.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ISO, IE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. 5. 본 지침의 규정 이외에 IMO 등 국제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거나 정보기술 및 운영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다. 6. 이 지침은 회사나 선박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,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일반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일반사항</p> <p>101.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지침은 정보기술(IT)이나 운영기술(OT)을 운용하여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 또는 선박에 적용한다. 2. 이 지침은 사이버보안 시스템의 수준 및 그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선주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. 3. <u>원격검사를 적용함에 있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국제협약 및 기국법 및 기항지의 국내법 등을 만족함을 기본으로 한다. (2020)</u> 34.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선급 및 강선규칙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 다만,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은 제외한다. 45.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ISO, IE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. 56. 본 지침의 규정 이외에 IMO 등 국제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거나 정보기술 및 운영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다. 67. 이 지침은 회사나 선박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,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 및 강선규칙에 따른다.</p> <p>1. - 18. <현행과 동일></p> <p>103. - 105 <현행과 동일></p>	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 및 강선규칙에 따른다.</p> <p>1. - 18. <현행과 동일></p> <p>19. “원격사이버보안검사(Remote Cyber Security Survey)”이라 함은 <u>회사나 선박의 사이버 시스템 검사 시 검사원이 직접 입회하여 검사하는 대신에 우리 선급이 회사나 선박 소유자가 제출한 전자파일 형태(사진, 비디오, 문서 사본 등)의 자료를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선박과 통신하여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. (2020)</u></p> <p>103. - 105 <현행과 동일></p>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4 절 <현행과 동일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선급검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- 제 4 절 <현행과 동일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5 절 원격사이버보안검사 (2020)</p> <p>501. 일반사항</p> <p>1. 회사 또는 선박에 대한 원격사이버보안검사는 원격사이버보안검사 신청이 있을 때 시행한다. 단, 검사원의 입회 제한 등으로 현장검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사이버보안검사를 연속으로 시행할 수 없다.</p> <p>2. 원격사이버보안검사 시 요구되는 자료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원이 입회하는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.</p> <p>3. 회사나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현장 검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동등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(사진, 비디오, 문서 사본 등)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필요한 경우, 우리 선급과 회사 또는 선박 사이에 실시간 화상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. ↓</p>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